

#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인쇄/1998년 11월 3일

발행/1998년 11월 6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북한경제사회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6 팩시밀리 901-2544

© 민족통일연구원, 1998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연구보고서 98-04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 순 희

민족통일연구원

#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은 인도주의 및 인권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당위적 과제라고 할 때, 언젠가는 현실화될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상정하고,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들은 이산가족 가정의 평화는 물론 남북한의 내적 통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문제점을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과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상의 법적문제로 나누어 논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1. 남북이산가족 현황 및 재결합 사례

### 가. 남북이산가족 현황

정부의 공식 견해에 따르면, 남북이산가족이란 1945년 9월 이후 동거여하를 불문하고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자녀를 말하며, 여기에는 전쟁으로 발생한 실향민과 남·월북자 및 정전협정 이후의 남·월북자나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고, 광의로 볼 때는 재결합에 따라 배우자, 형제자매의 혈족 및 인척으로서의 신분관계를 회복·형성하는 자를 포함한다. 남북이산가족의 수는 조사를 한 당해 년도 및 기관, 이산가족의 범위 설정 기준 등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재 남북이산가족의 수는 국내 거주 이산가족 2, 3세대를 포함하여 약 767만 명으로 알려져 있

고, 그 중 남한 거주 60세 이상 이산가족은 약 69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결합이 추진될 이산가족의 범위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하다. 국내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전통적 법의식과 관습을 고려하여 부부, 부모와 자녀, 조손,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하되 방계 혈족 8촌, 처·외가 인척 4촌까지를 재결합이 추진될 이산가족의 범위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서 이산가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 교류가 시작된 1989년부터 1998년 8월 현재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201건에 달하며 지난해부터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알선업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제3국을 통한 상봉 건수는 공식 집계 몇 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가족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 거주 가족의 안전 문제와, 또는 다음에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능한 한 상봉 사실 자체를 숨기려 한다는 것이다.

#### 나. 상봉 및 재결합 사례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일반화는 경험적으로 입증된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최선의 방법이며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경험적 방법을 통한 자료 수집이 수월하지가 않다. 사실상 소수의 탈북자 사례를 제외하고는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및 제3국에서 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을 이룬 당사자를 만나는 일도 쉽지 않고, 소량의 관련자료들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

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 사례 분석은 탈북자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헌 자료에 의존하였다. 또한 탈북자 사례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면담 및 설문조사를 꺼려 하여 소수의 면담자를 통해 다른 사례들을 수집하기도 하였다. 상봉 및 재결합 사례 분석은 1983년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통해 상봉·재결합을 이룬 사례 8건, 탈북 귀순자 사례 8건, 그리고 제3국 상봉 사례 5건 등을 자료로 하였다.

## 2.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

재결합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고 다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굳이 한정된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재결합으로 인한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재결합의 의미에 상봉 및 교류까지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재결합으로 인한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상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재결합의 의미를 가족 또는 친족으로서의 법률관계를 회복 또는 형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 가.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

남북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시 발생 가능한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은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논하였다. 첫째, 남북간 이질화로 인한 갈등이다.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상이하게 형성된 의식구조 및 인성으로 인한 갈등, 남북간의 경제 및 문화 생활 수준의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이 그것이다. 둘째, 이산의 원인 및 유형에 따른 갈등이다. 월북자 및 북송교포와 그들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고통을 겪은 남한 거주 가족·친척과의 상봉·재결합시 갈등, 남한 거주 월남자와 그들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한 북한의 월남자 가족과의 상봉·재결합시 갈등, 이산 당시의 상황 내지 과정에 대한 오해로 인한 상봉·재결합 당사자들간 갈등, 부부 이산의 경우,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이 모두 결혼을 한 상태에서의 상봉 및 재결합시 갈등, 가장이 단신 월남하여 재혼한 경우, 북한 거주 가족과의 상봉·재결합시 갈등 등이 그것이다. 셋째, 혈육과의 재결합이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에 겪게될 갈등이다. 경제적 지원 문제로 인한 갈등, 상봉·재결합한 가족의 쇠잔함과 무능력에 대한 실망과 부담, 생면부지의 친척 상봉시 야기될 수 있는 갈등 등이 그것이다. 넷째, 재결합시 발생할 법적 문제 처리 과정에서의 심리적 갈등이다. 가장이 단신 월남하여 재혼한 경우와 부부 상봉의 경우에 발생할 법적 문제 처리 과정에서의 심리적 갈등, 재산상의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갈등 등이 그것이다.

#### 나. 가족 관계 및 재산 관계상의 법적 문제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가족 관계 및 재산 관계상의 법적 문제는 호적 관계, 중혼 관계, 상속 관계 등으로 나누어 논하였다. 첫째, 호적관계는 월남자가 남한에서 가(假)호적, 또는 호적을 취적하면서 누락, 또는 제적시켰던 가족의 입적 및 호적 부활 기재 문제와 월북 및 남북자의 호적 기재 정정 내지 호적 부활 기재 문제, 월남자의 가호적 취적시 허위 사실 신고로 인해 재결합시 발생할 법적 문제 등이다. 둘째, 중혼 관계는 북한 거주 배우자에 대한 부재 선고나 실종 선고가 없이 재결합하게 되는 경우, 북한에서 혼인했던 월남자가 북한에서 이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남한에서 재혼한 상태에서



북한의 배우자와 재결합하게 되는 경우, 부부 중 한 쪽이 월남하여 재혼한 상태에서 북한의 배우자와 재결합하게 되는 경우, 부부 중 한 쪽이 월북, 또는 남북된 후 다른 한 쪽이 재혼한 상태에서 북한의 배우자와 재결합하게 되는 경우, 북한의 배우자를 민법상 실종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고 혼인을 해소한 다음 재혼한 상태에서 북한의 배우자와 재결합하게 되는 경우, 부부 이산 후 어느 한 쪽이 타인과 부부의 명의로 동거 생활을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결합하게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중혼 문제이다. 셋째, 상속 관계는 남한의 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제외한 채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 재산을 정리한 경우, 부재 선고, 또는 실종 선고 후 남북에 각각 법정 상속인이 현존하고, 또 피상속인이 그 선고 후의 경제 활동에 의해 새로이 축적한 부를 상속인이 상속할 경우 등의 상속 문제이다.

### 3. 대응 방안 모색

#### 가.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 해소 방안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재결합시 발생할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 해소 방안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논하였다. 첫째, 심리 상담 및 조언이다. 상봉·재결합을 전후해 상봉·재결합 당사자들이 만남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심각한 갈등 없이 상호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및 조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상호 적응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봉 이전에 남한의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상봉 관련 주요 사항 주지, 상봉 후 재결합 이전에 남북 이산가족의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남한 이주 북한 이산가족에 대한

적용 교육, 남한 주민의 동참 유도 등을 적극 고려한다. 셋째, 정책적 지원으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및 재결합시 발생할 상호 갈등 및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법·제도 및 정책적 차원에서의 대비책을 강구한다.

#### 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상의 법적문제 대응방안

재결합으로 인해 가족 또는 친족으로서의 법률 관계가 회복되거나, 또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재결합 당사자들 간에 갈등 및 부담이 야기될 수 있으며, 현행법에 의한 문제 해결이 당사자들 상호간에 충분히 이해, 납득되지 못하고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형성하게 된다면 또 다시 헤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결합시 발생할 법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현행법 적용이라는 형식 논리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주요 기본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문제 해결의 기본 고려사항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첫째, 인도주의 원칙 내지 정신에 입각한 신중한 법적 처리를 지향한다. 둘째, 재결합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중혼 및 상속 등 개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기존 질서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질서 유지를 기함에 있어 발생하는 부작용은 인도주의 및 당사자 의사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을 모색한다.

넷째,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여 이산가족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가족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분단과 같은 불가항력적 조건을 참작하여 법적 권리의 적용 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며,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재결합시 발생할 주요 법적 문제 대응 방안도 호적 문제, 중혼 문제, 상속문제 등으로 나누어 논하였다. 첫째, 호적 문제 대응 방안에 있어 주요 사항은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호적 관계의 법적 정리는 기존 가족 관계의 안정성 보호와 유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호적 취득 및 부활 기재, 호적기재 정정 등과 관련한 법·행정적 절차의 체계화 및 간소화를 통해 재결합 당사자들의 정신적 내지 법·행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혼 문제 대응 방안에 있어 주요 사항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중혼의 효력을 통상의 중혼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상속 문제 대응 방안에 있어 주요 사항은 분단이라는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한 이산이었으므로 상속 문제에 있어 어느 한 쪽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재결합 당사자들간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실정법에 따른 현행 법질서를 존중하되 일률적인 법적용보다는 이산가족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하에 가족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	1
II. 남북이산가족 현황 및 재결합 사례 .....	4
1. 남북이산가족 현황 .....	4
2. 상봉 및 재결합 사례 .....	12
III.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 .....	30
1.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 .....	32
2.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상의 법적 문제 .....	44
IV. 대응 방안 모색 .....	50
1.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 해소 방안 .....	50
2.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상의 법적 문제 대응 방안 .....	54
V. 결 론 .....	64
참고문헌 .....	68

## I. 서 론

한반도 분단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며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이다. 그러나 5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 점차 감각을 잃어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 후 예상되는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인 혼란을 우려하여 정작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세월이 갈수록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더욱 커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북한에 두고온 가족과 친척을 그리며 맺힌 한을 풀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수백 만의 이산가족이다.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 하나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 본능의 발로이며, 정치·이념 및 제도를 뛰어 넘는 인류 및 인도주의의 문제이다. 또한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하나 되어 사는 것은 인간의 천부적인 기본권리이며 인간존엄성의 구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북이산가족 문제는 그 해결에 있어 팔목할 만한 진전이 없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발효된 이후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 교류 및 접촉은 주로 남한 이산가족 당사자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 성사되었다. 그 가운데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루어진 남북이산가족 상봉 수는 1998년 8월 현재 201건에 달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남한의 이산가족과 북한 거주 가족의 재결합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당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1) 통일부,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서울: 통일부, 1998. 8), p. 26.

## 2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하겠다. 그러나 사실상 남한에서조차 재결합 문제가 공개적으로 비중 있게 거론된 일도 거의 없었다. 북한당국의 소극적인 태도, 재결합의 염원이 가장 강한 이산1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을 점중, 그리고 이산1세대의 절박함을 공감하지 못하는 후세대의 소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현 시점에서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이산1세대의 고령화와 사망을 점중이라는 안타까운 사실 때문에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및 재결합이 적극 추진되어야만 한다. 오랜 세월을 기본 인권을 상실한 채 살아온 그들로 하여금 타계하기 전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당위적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남북한은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으로 이질화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이 실현된다면, 이로 인해 재결합 당사자들 간에 상호 갈등 및 여러 가지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들은 이산가족 가정의 평화는 물론 남북한의 내적 통합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 모색은 인권 및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사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성과는 매우 부진하다. 재결합시 발생할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논문이 몇 편 있으며 그 외의 문제와 관련하여 단편적인 글들이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은 남북한의 화해·협력체제 구축을 예상보다 훨씬 더 앞당길 수도 있다. 화해·협력체제하에서는 남북이산가족의 자유왕래와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이 순조로이 성사

될 수 있다고 할 때, 이에 대비하여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학문적 접근이 적극 시도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결과물이 상당량 축적되어야만 할 것이다.<sup>2)</sup>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문제점을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과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상의 법적문제로 나누어 논한 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문제점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주로 관련 문헌을 자료로 한 내용 분석이며, 상봉 및 재결합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실증 자료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자문 결과를 주요 보충 자료로 활용한다.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 내지 해결 방안은 재결합 시점에서의 남북 관계와 재결합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sup>3)</sup> 본 논문은 남북 화해·협력 단계에서 남한에서의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을 상정하고 문제점 분석과 대책을 모색하기로 한다. 남북한 사이에 기본합의서가 이행되고 화해·협력체제가 구축되면 남북당국 모두가 이산가족의 고통 경감이라는 인도적 견지에서 남북이산가족의 자유 왕래와 상봉·교류 및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적극 추진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 남북이산가족 재결합 문제가 적극 연구 논의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90년대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탈북자의 남한 거주 가족 및 친척들과의 상봉 및 재결합과 이로 인한 문제 발생이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다.

3) 제성호,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일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한 모색」(서울: 통일원, 1992), pp. 238~239; 법원행정처, 「북한의 가족법」(서울: 법원행정처, 1998), p. 340 참조.

## II. 남북이산가족 현황 및 재결합 사례

### 1. 남북이산가족 현황

1971년 8월 대한적십자사 제의로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된 이래 남북한간에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1972년 제20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이루어진 '5개항 의제'<sup>4)</sup>에 대한 합의와 1991년 12월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되어 다음해 2월에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sup>5)</sup>가 그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진행된 남북적십자회담의 주요성과는 1985년 9월에 성사된 제한된 규모의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사업에 불과하며, 1990년대에 들어서도 북한 핵문제, 탈북자 문제, 대북지원 문제 등에 밀려 남북이산가족 문제는 해결의 단서조차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산가족 문제는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남북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천명한 국민의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 7대과제<sup>6)</sup>를 선정, 발표하고 관

---

4) 5개항의제는 남북이산가족 및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확인 문제, 남북이산가족 및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 실현 문제, 남북이산가족 및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실시 문제, 남북이산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문제,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으로 향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제2권 (서울: 대한적십자사, 1986), p. 294.

5) 동 합의서 제18조에서 남북한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6)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 간소화, 제3국에서의 생사확인 및 상봉지원, 국제우편을 통한 남북 우편교류 추진,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이산가족민간단체협의회 구성,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발족, 이산가족관련법 개정 등이다.



런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내 보이고 있으며, 이에 즈음해 북한에서도 전과는 다른 동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sup>7)</sup> 이와 같은 추세로 미루어 볼 때 향후 남북이산가족 상봉·교류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상봉·교류의 활성화와 나아가 재결합까지를 상정한다면 남북이산가족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은 그 때를 대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라 하겠다.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며 또한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새롭게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작업이 부진한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체적인 예로 남북이산가족의 개념 규정, 남북이산가족의 실수(實數) 및 재결합이 추진될 이산가족의 범위, 남북이산가족 상봉·교류 실태 파악 등이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는 남북이산가족 상봉·교류 및 재결합의 추진과 성사를 부진하게 하는 기본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견해에 따르면, 남북이산가족이란 1945년 9월 이후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자녀를 말하며, 여기에는 전쟁으로 발생한 실향민과 남·월북자 및 정전협정 이후의 남·월북자나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고, 광의로 볼 때는 재결합에 따라 배우자, 형제자매의 혈족 및 인척으로서의 신분관계를 회복·형성하는 자를 포함한다.<sup>8)</sup> 그러나 최근 정부의 한 당국자는 6.25전쟁 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7) '주소안내소' 설치, 주소안내소를 통한 북한내 이산가족 상봉사례 보도,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성사, 제3국에서의 남북 이산가족 비공식 접촉 및 상봉 목인 내지 허용, 남한거주 이산가족에게 방송편지 발송 등이 그것이다.

8) 통일원,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실무안내」 (서울: 통일원인도지원국, 1997), p. 5.

## 6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월북자들의 가족도 이산가족으로 간주하여 남북이산가족의 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9)</sup> 통상적 의미의 이산가족은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을 전후해 헤어진 가족을 의미하지만 월북자들도 '신형 이산가족'으로 규정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통상적 의미의 이산가족 개념에 이른바 '신형 이산가족'의 개념을 예외 규정으로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종래의 공식적인 남북이산가족 개념 규정에는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이산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자들로 '정전협정 이후의 남·월북자'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란을 빚고 있다. 종래의 남북이산가족 개념상의 월북자와 이른바 '신형 이산가족'으로 개념화된 월북자는 그 의미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남북이산가족의 수도 조사를 한 당해년도 및 기관, 이산가족의 범위 설정 기준 등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 초 이북5도위원회에서 발간한 「이북5도 30년사」에는 6.25전 월남자, 6.25후 휴전전까지 남하 피난민, 6.25동란중 행방불명자와 남북자, 1953년 반공포로 석방자와 해방 이후 월북자 및 그 가족들, 그리고 휴전 이후 남북자 및 북한 이탈주민과 그 가족들을 모두 포함하여 이산가족의 수가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되어 있다.<sup>10)</sup> 그러나 또 다른 자료에서 이북5도위원회는 1970년 가호적 신고자 수 546만3천 명을 기준으로 그 동안의 인구증가율 40.34%를 감안하여 1996년 12월 기준, 이산가족의 수를 약 767만 명으로 추산, 집계하고 있으며, 그 중 남한 거주 60세 이상 이산가족은 약 69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1)</sup>

국내 실향민 수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 1995

9) 「연합통신」, 1998. 7. 7.

10) 통일원, 앞의 책, p. 7.

11) 통일부 인도지원국 자료 (1998년 6월 8일자) 참조.

년 11월 1일 현재 통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실향민 수는 40만3천5백15명('95 인구주택 총조사시의 10% 표본조사 수치)이며, 60세 이상자는 61%인 24만8천명, 65세 이상자는 17만7천명 정도이다.<sup>12)</sup> 그러나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현재 60세 이상의 실향민 1세대가 4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3)</sup> 이상과 같이 남북이산가족의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수치들이 제시되고 있어 실수(實數) 파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원인은 객관적인 관련 자료의 부족 및 실증 자료의 타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 연구자에 의하면, 통상 '1천만 이산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남북이산가족의 실수(實數)를 너무 부풀린 것이며, 이러한 수치가 나오게 된 원인은 월남 이동 인구에 대한 부정확한 통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sup>14)</sup>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실증적 내지 객관적 근거가 없는 '1천만 이산가족'이라는 표현의 허구성을 지양하고 이산가족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자는 이산가족 실태 파악과 관련한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sup>15)</sup> 월남하여 가호적(假戶籍)을 만든 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호적을 보면 고향 본적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가(假)'가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북한 출신 인구를 파악한 것이며, 또한 가가호호 방문하여 조사를 했다고 하나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결합이 추진될 이산가족의 범위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견해도

12) 통일원, 앞의 책, p. 8.

13) 「연합통신」, 1998. 2. 17.

14) 이용기, “이산가족 연구 어디까지 왔나,” 「역사비평」 (서울: 역사비평사, 1998. 가을), pp. 256~258.

15) “토론 3: 남북이산가족과 재결합,” 「인도법논총」 제13집 (서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993), p. 202.

다양하다. 한 예는, 이산가족의 범위를 194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동기를 불문하고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한 지역에서 분리된 상태로 각기 거주하고 있는 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자매로 이해하고 있다.<sup>16)</sup> 또 다른 한 예는, 이산가족의 범위를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바, 1946년 9월 북한에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동시행세칙’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조선민사령’과 ‘조선호적령’에 의하여, 그 이후에는 남북한 각기의 가족법에 의하여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으로서의 법률상의 신분 관계가 인정되던 자 중, 원인과 동기를 불문하고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한 지역에서 분리된 상태로 각기 거주하고 있는 자와 이산 이후 출생한 그들의 자녀를 좁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결합에 의하여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서의 신분 관계를 회복·형성하게 되는 자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7)</sup> 이 외에도 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에 의한 방계 8촌, 외사촌까지의 재결합을 보장한다는 견해도 있다.<sup>18)</sup> 국내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전통적 범의식과 관습을 고려하여 부부, 부모와 자녀, 조손,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하되 방계 혈족 8촌, 처·외가 인척 4촌까지를 재결합이 추진될 이산가족의 범위로 보고 있다.<sup>19)</sup>

1985년 8월 적십자회담에서 남북한은 이산가족의 범위를 헤어질

16) 제성호, 앞의 글, p. 230.

17) 신영호,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10회 통일문제 심포지엄 논문집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 p. 41.

18) 민족통일연구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자유왕래·접촉 실현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13.

19) 통일원, 앞의 책, p. 5; 국제적으로는 부부, 부모와 자녀, 직계존속 및 손자녀 등으로 하되 문화적 관습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의 책, p. 6.

당시의 가족과 그후의 출생 자녀로 합의했으며, 친척의 경우엔 남측이 방계 8촌과 처·외가 4촌을, 북측은 이밖에 당사자가 요구하는 친척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던 바, 결국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 대표 접촉에서 북한 주장대로 합의되었다.<sup>20)</sup> 현재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서 이산가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sup>21)</sup> 이산가족의 범위는 일정한 원칙을 정하되, 재결합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매 건별로 신축성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적십자 채널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9월에 이루어진 제1차 고향방문단 교환이 유일하며,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정부가 1989년 6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을 만든데 이어 1990년 8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남북 교류가 시작된 1989년부터 1998년 8월 현재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201건에 달하며 지난해부터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22)</sup>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연길, 도문, 장백, 단동 등지에서 비공식 상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앞선업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제3국을 통한 상봉 건수는 공식 집계 몇 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가족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 거주 가족의 안전 문제와, 또는 다음에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능한 한 상봉 사실 자체를 숨기려 한다는 것이다.<sup>23)</sup>

이산가족 문제는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정

20) 대한적십자사, 앞의 책, p. 161.

21) 위의 책, p. 6.

22) 통일부, 앞의 책, p. 26.

23) 송현순, "특집1 두만강야 말해다오," 「한겨레 21」, 1998. 4. 23.

부는 지원 역할을 한다는 게 새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 하에 정부는 지난 5월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발족, 이산가족정보 통합센터 설치,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영세 이산가족에 대한 상봉비 지원 등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노력이 기대한 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이산가족의 개념 규정, 남북이산가족의 실수(實數) 및 재결합이 추진될 이산가족의 범위, 남북이산가족 상봉·교류 실태 파악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남북이산가족의 발생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해방의 감격과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우리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어진 38선으로 인한 분단과 이산, 6.25 동족상잔으로 인한 비극적인 민족이산, 그리고 휴전협정 조인 이후 발생한 탈북 및 월북, 납북, 그리고 일본에서의 재일동포 복송 등이 그것이다.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이란 이상과 같은 원인들로 인해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이 남북한이나 제3국에서 재회하고 자유의사로 법률상의 가족·친족관계를 회복·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4)</sup>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의 당위성도 이상과 같은 이산의 원인에서 찾아질 수 있으며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남과 북으로 흩어지게 된 것은 그 근원이 외부로부터의 인위적 작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산가족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재결합할 권리가 있다. 둘째,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 본래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합당한 당위적인 것이다. 혈육은 결코 헤어질 수 없으며 헤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이

24) 통일원, 앞의 책, p. 86.

고 전통적인 가치지향이며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정도의 것이다. 셋째, 이산가족의 재결합 추진 및 성사는 인권 및 인도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 사안일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의 필수 과정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화해의 상징이고 남북 관계 개선의 징표로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인도주의 문제<sup>25)</sup>라고 할 때,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 추진은 그 자체가 평화통일의 방법이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넷째, 고령화와 사망으로 인한 이산1세대의 감소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및 재결합 추진은 보다 더 적극화 되어야만 한다. 이산1세대가 겪고 있는 이산으로 인한 고통과 한을 공감할 수 없는 후세대들에게는 북한 거주 가족·친척과의 상봉 및 재결합이 절박한 문제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본질 내지 중요성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은 또한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서도 당위성을 지닌다.<sup>27)</sup>

첫째, 간접적 근거로 실향사민(失鄉私民)의 귀향 허용 및 협조를 명시한 ‘한국휴전협정’,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가족의 보호에 관해 규정

- 25)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행한 정원식총리의 기조연설의 한 부분. 이재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인적교류,” 『통일문제연구』4권1호 (서울: 통일원, 1992. 봄), p. 139에서 재인용.
- 26) 이산가족 재결합 문제는 물질주의에 자족(自足)한 서독인들에게 평화적 민족통일 의식을 일깨우는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산가족 재결합의 추진은 민족동질성 회복을 통한 평화통일의 분위기 조성에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장희,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분단독일의 사례,” 『인도법논총』13집, p. 165.
- 27)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의 법적근거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 김명기 외, “남북이산가족 재회에 관한 연구,” 『인도법논총』4·5집 (서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983), pp. 12~25; 김명기,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 -법적 의무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13집; 제성호, “남북이산가족의 법적성격과 해결방안,” 『통일문제연구』제5권1호 (서울: 통일원, 1993. 봄), pp. 137~139; 제성호,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문제점과 해결방안,” pp. 233~238; 지봉도,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의 실천적 방안,” 『인도법논총』14집, (서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994), pp. 139~141.

한 ‘세계인권선언’, 기본적 인권 보장을 규정한 ‘국제연합헌장’, 이산가족의 소식 전달 의무와 이산가족의 재회에 관해 규정한 ‘제네바 제4협약’,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관해 규정한 ‘제네바협약 제1추가협정서’, 남북간 다방면적인 제반교류 실시를 명시한 ‘7.4남북공동성명’,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 추진을 규정한 ‘남북조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이 있다.

둘째, 직접적 근거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들 수 있으며, 이 문건에 명시된 재결합 관련 규정들은 남북한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는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 2. 상봉 및 재결합 사례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일반화는 경험적으로 입증된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최선의 방법이며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경험적 방법을 통한 자료 수집이 수월하지가 않다. 사실상 소수의 탈북자 사례를 제외하고는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및 제3국에서 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을 이룬 당사자를 만나는 일도 쉽지 않고, 소량의 관련자료들도 개인



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 사례 분석은 탈북자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헌 자료에 의존하였다.<sup>28)</sup> 또한 탈북자 사례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면담 및 설문조사를 꺼려하여 소수의 면담자를 통해 다른 사례들을 수집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례 분석을 위한 경험적인 1차자료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분석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소량의 자료 분석을 통한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추론 내지 일반화가 결코 무리인 것만은 아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거의 유사하며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양의 실증 자료 수집이 여의치 않은 조건에서는 소량이나마 국내 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 사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 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 대책을 모색하는 것도 적지않은 의의가 있으리라고 본다.

### 가. 1983년 KBS 생방송 사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38일 동안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실시되었다. 이 때에 접수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 건수는 총 100,95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3,536 가족이 출연해서 10,189 가족이 만나 19.03%의 상봉률을 나타냈다.<sup>29)</sup>

28) 1983년 KBS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을 한 당사자들의 그후 행적 내지 후일담에 관한 잡지 기사가 두 편 정도 있을 뿐이다. 관련기사 및 당사자의 수기가 극소량인 것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뒷날 이야기가 기사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9) 한국방송공사,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TV 특별생방송 138일의 기록」, (서울:

전후 처음 실시된 방송을 통한 전국적 규모의 이산가족 찾기 행사에서 나타난 특기할 만한 사실로 지적된 것은 상봉가족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였다는 것, 당시 신청 접수된 10만여 건 가운데 65.7%가 6.25전쟁 중 헤어졌다는 것, 그리고 찾고자 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 부모가 대부분이었으며 아내와 남편을 찾는 경우는 0.7%에 불과하다는 것 등이었다.<sup>30)</sup>

(1) 부부 및 부녀 상봉

사례 131): 1950년 12월, 첫 딸을 낳은지 석 달만에 피난길에 올라 서울에 도착하여 피난민 수용소에서 임시로 머물던 중 남편이 국군에 징집되어 전장에 나가고, 남편의 참전 중에 부인과 딸은 다른 피난민 수용소로 옮겨졌으며 이로 인해 이산가족이 되었다.

그후 남편은 1956년에 재혼하여 청주에 정착하였으며 부인도 1957년에 재혼하여 서울에 정착하였다. 1983년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보았으나 남남이 된 부부는 재혼하여 살고 있는 식구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 남편의 경우, 딸만은 찾고 싶었다. 그러나 부인을 찾게 되면 또 비극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망설이던 중 재혼한 부인의 양해와 격려하에 방송을 통해 헤어진지 33년만에 부인과 딸을 만났다. 상봉 직후 남편은 상봉한 전부인과 딸을 청주의 집으로 데려가 재혼한 부인과 인사시키었으며, 재혼한 부인의 양해하에 몇 차례에 걸쳐 서울에 올라가 전부인과 딸을 만나고 오기도 하였다.

---

한국방송공사, 1984) 참조.

30) 위의 책 참조.

31) 오효진, “헤어져 30년, 만나 1년,” 『월간조선』 (서울: 조선일보사, 1984.6), pp. 288~293.

이산가족 부부의 상봉은 감격의 순간이었으나 얼마 가지 못해 양쪽 가정 모두 심한 풍파를 겪었다. 남편의 전부인이 재혼하지 않은줄 알고 상봉을 권하였다든 재혼한 부인은 남편 전부인의 재혼 사실을 알고난 이후 남편과 전부인의 만남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다. 그리고 남편의 가정에서 풍파가 일어난 결정적 계기는 상봉한 딸의 호적 정정 문제로 인해서였다. 남편은 전부인의 재혼으로 바뀐 딸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꾸어 호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재혼한 부인은 처음엔 선뜻 동의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호적에 딸의 생모 이름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반대하였으며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도 반대하였다. 이후 가정불화가 시작되었다.

딸의 호적정정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상봉한 딸을 남편이 전부인과 의 외도에 의해 낳아가지고 데리고 온 것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딸이 거부를 하였으며, 이후 딸의 입적(入籍) 문제가 재론되지 않음으로써 가족간의 갈등과 불화가 진정될 수 있었다. 그리고 33년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던 부부는 또다시 이산가족이 되었다.

사례 232): 1950년 결혼하여 신혼생활중, 1.4후퇴 당시 미군부대에 근무하던 남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갖은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헤어져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다. 남편은 수년 후 재혼하였으나 10여 년 후 자녀가 없이 이혼하였다. 부인은 혼자 딸을 낳아 키우면서 32년 동안 수절하였고 딸은 친정오빠의 호적에 올리였다.

딸이 적극 주선하여 부부 및 부녀 상봉을 성사시켰다. 재혼했었으나 자녀가 없이 다시 혼자가 된 남편과 32년 동안 수절해 온 부인과

---

32) 위의 글, p. 317.

의 상봉 및 재결합은 그 딸과 주변사람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 부부 상봉의 당사자들은 상봉 직후 결혼식을 거행하였으며 매우 만족해 했다. 특히 부인은 그동안 수절해 온 것에 대해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좋은 건 말도 못하지요. 또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것도 말도 못하구요. 우리 영감이 나를 업고 다녀도 시원치 않지”라는 말로 대신했다. 그러나 60대와 50대의 재결합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큰 걱정이었으며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2) 남매 상봉<sup>33)</sup>

1950년 12월, 중공군이 내려온다고 해서 고향을 떠나 남으로 피난 하던 길에 당시 19세였던 여동생이 물을 먹기위해 잠시 대열에서 이탈했다가 헤어지게 되고 말았다. 그후 여동생은 피난민 수용소를 거쳐서 식당일, 가정부일 등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왔다.

여동생은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 오빠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주변 사람들이 극구 권하였다. 어려운 살림 형편이었던 여동생에게 그들은 오빠가 돈 많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어 넣어 주기도 하였다. 방송을 통해 만난 오빠는 병들어 불편한 몸이었으며 연금생활자로 넉넉하지 못하게 살고 있었다.

남매가 직접 만나기 전, 화면을 통한 상봉에서 여동생은 오빠에게 쌓인 원망을 토로하였다. “오빠, 그래 왜 나를 때놓고 가, 나 죽으라고 때렸잖어?” 등 동생의 원망에 대해 오빠는 변명과 함께 달래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남매는 상봉은 하였지만 양쪽 다 몹시 어려운 살림이어서 서로 가슴아파 할 뿐이었다.

---

33) 위의 글, pp. 303~307.

(3) 모자 및 형제 상봉<sup>34)</sup>

어머니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으나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여동생(아들의 이모)이 천안 고아원에 언니의 아들 하나를 맡긴 것이 이산의 원인이 되었다. 그후 어머니는 재혼하였으며 그 아들도 홀로 성장하여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

재혼한 어머니는 살림형편이 넉넉지 못하였으며 친동생도 의부의 성을 따르고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했으나 어머니가 반대하였으며, 친동생의 성도 본래의 것으로 바꾸려 했으나 어머니가 꺼려하여 그대로 두었다. 상봉 후 그 어머니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지!”라는 말을 하여 아들과의 상봉으로 인한 심경의 착잡함을 드러내 보였다.

(4) 부모와 아들 및 형제 상봉

사례 135): 1951년 어머니가 잠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첫들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동네사람들이 고아원에 맡겨 버려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후 아들은 공장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하였다.

방송을 통해 부모, 형제들과 상봉하였으나 너무 어릴 때 헤어져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다. 상봉 후 한동안은 서로 서먹서먹했으나 아들이 곧 가족들에게 동화되어 잘 지냈다. 처음엔 얼굴에 시름이 가득하고 잘 웃지도 않고 눈치만 보던 아들이 얼마 안있어 아주 명랑해졌으며 가족들과 잘 지냈다. 부모 생각으로는 아들이 부모에게 기대어 살 줄 알았는데 아들은 혼자 독립하여 살기를 원했다.

---

34) 위의 글, p. 309.

35) 위의 글, p. 313.

사례 236): 1949년 가족들과 월남하던 중 아들 하나가 열차에서 추락하여 이산가족이 되었다. 그후 외톨이가 된 아들은 고아원을 전전하며 막노동과 광부생활 등 온갖 고생을 하며 자랐다.

헤어진지 34년만에 외톨이였던 아들이 가족들과 상봉·재결합하였다. 가족들과의 재결합 후 형의 주선으로 가게를 차렸으나 1년도 못되어 가게문을 닫고 지방으로 내려갔으며 다시 누나와 남동생이 가게를 내어 주었으나 이를 마다하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연락도 없이 지방에서 홀로 지냈다. 한 때 형이 데리고 있으며 보살펴 주기도 했으나 형제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서먹서먹하게 대하는 등 어려움을 나타냈다.

#### (5) 자매 상봉

사례 137): 만주에서 살다가 가족이 월남하였으나 곧이어 아버지가 납치 당하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시어 언니는 외가에서 자라고 동생은 양녀로 보내져 이산가족이 되었다.

벽찬 감격의 상봉을 했으며 고생을 하고 외롭게 자란 동생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 자매가 모두 서울에서 살면서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주로 전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계가 어려워진 동생에 대해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도와주지 못하는 언니의 안타까움이 컸으며, 고생하며 외롭게 자란 동생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언니가 많이 노력하였다.

---

36) 명병훈, “이산가족, 상봉 그후 1년,” 「여성중앙」 (서울: 중앙일보사, 1984. 6), p. 177.

37) 위의 글, p. 177.

사례 238): 6.25전쟁 당시 어머니와 다섯 남매가 피난하던 중 6세된 딸을 대구의 이웃 약방에 맡겨 놓고 부산으로 떠나버려 이산가족이 되었다. 딸을 맡기고 떠난 며칠 후 다시 대구로 온 어머니는 딸을 찾지 못하고 다른 자녀들과 함께 서울에 정착하였다. 혼자 남겨졌던 딸은 수양딸로, 가정부로 전전하며 살다 결혼하여 부산에 정착하였다.

상봉 당시 혼자 남겨져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온 여동생은 언니와 오빠들에 대한 표정이 차가웠으며 이에 반해 언니는 감격에 복받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다섯 남매 중 혼자 살아온 여동생이 가장 살림 형편이 좋았다. 상봉 후 다섯 남매는 명절 때에 모두 모여 지내며 여동생이 언니 오빠의 가족들을 부산으로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기도 하였다.

#### 나. 탈북 귀순자 사례

탈북자의 남한 거주 가족 및 친척들과의 상봉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탈북자 본인과 가족 및 친척의 대부분은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며, 그 이유는 상봉의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친척과의 만남이 성사되고 있으며 드물게는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 귀국자(북송교포) 신분이었던 탈북자들은 일본 거주 부모 및 가족·친척과의 상봉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38) 위의 글, p. 180.

(1) 30대 남자

사례 1: 남한 거주 친척이 20여 명 있으나 첫 상봉 이후 탈북자 본인이 친척들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 첫 상봉은 감격적이었으나 이후 친척들에게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친척들과의 돈 거래 관계 때문이었다. 친척들의 요구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돌려 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사례 2: 남한 거주 삼촌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탈북자 본인은 한국에서 친척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로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삼촌에게 크게 의지했고 따라서 삼촌과의 동업도 망설이지 않고 시작했다. 그러나 동업 과정에서 서로간에 갈등이 많았으며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았다. 특히 탈북자 본인에 대해 삼촌의 불만이 컸으며 삼촌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 것이 주요 이유였다. 그러나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삼촌이 탈북 귀순한 조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기만 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사례 3: 1950년 6. 25발생 직후 백부가 온 가족의 남하를 주장하였으나 백부, 숙부, 고모, 조모 등 네 사람만 월남하고, 조부 등 나머지 가족들은 참전 중이던 탈북자 본인의 아버지를 기다리기 위해 북한에 잔류하였다. 탈북자 본인은 남한 거주 친척과의 혈연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겼으며, 탈북 귀순후 친척 상봉을 고대하였다. 친척들과의 상봉 당시는 감격적이었으며 친척들도 크게 환대하였으므로 혈육의 정을 강하게 느꼈다. 친척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자제하였으며, 함께 살기를 제의한 친척도 없었다. 두 달쯤 백부덕에서 지낸 적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나 갈



등이 없이 지냈다. 탈북자 본인은 북한 거주시에 남한 방송 청취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탈북자 본인의 신원, 즉 친척관계 여부를 의심하는 친척이 있어 매우 곤혹스러웠다.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 및 친척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탈북자 본인도 월남한 친척들을 크게 원망한 적이 있다.

### (2) 30대 부부

남편 아버지쪽으로 4촌이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을 줄까 우려되어 만나지 않고 있다. 남편은 탈북자 본인들로 인해 친척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 자립한 후에 만나겠다고 한다. 남편은 북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왔으며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편이었고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 (3) 북송교포 2세 남자

남한 거주 친척들이 알려준 바에 의하면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이 일본에 있으며 탈북자 본인도 상속인이지만, 일본 거주 형제들이 탈북자 본인을 사망으로 처리하고 아버지 재산을 상속, 정리하였다고 한다. 탈북자 본인은 귀순자 신분이므로 일본에 갈수도 없지만 일본 거주 가족들이 탈북자 본인과의 상봉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4) 북송교포 여자

1960년 탈북자 본인의 북송으로 일본 거주 가족들과 헤어졌다. 탈북 귀순 후 1995년 4월 서울에서 민단계인 시누이와 시동생을 만났으며 다음해 11월 일본에서 또 만났다. 그러나 조총련계인 오빠 가족은 만날 수 없었다. 탈북자 본인과 사상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오빠가 상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북한에 살 때에 시누이와 시동생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며 서울에서 만났을 때도 도움을 받았으나 부담을 주는 것 같이 더 이상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며 그후 경제적 지원도 끊기었다.

1995년 고향에 내려가 사촌오빠와 재회하였으며 사촌오빠는 혈연을 강조하며 환대하였다. 그러나 사촌오빠는 다시 만나는 것을 거부하며 이후 수년 간 고향에 내려오지 말 것과 서신교환도 없이 지낼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유는 북송교포인 탈북자 본인으로 인해 과거에 연좌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촌오빠가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또 다른 이유는 탈북자 본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다시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도 생각되었다. 탈북자 본인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한국내 토지를 사촌오빠가 오래 전에 처분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실이 있다.

또 다른 사촌오빠와 상봉했으나 상봉 이후 사촌을케는 전화 연락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친척과 상봉했으나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만났기 때문인지 정을 느낄 수 없었으며 특히 처음으로 만나는 친척은 더욱 그러했다. 탈북자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탈북자라는 신분 등에서 비롯된 자

격지심 때문인지 친척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고 불편했으며 친척들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는 것 같았다.

(5) 탈북 귀환 국군 포로 조창호<sup>39)</sup>

1951년 국군 장교로 6.25동란 참전중 포로로 억류, 북한에 정착한 후 43년이 지난 1994년에 북한을 탈출, 남한으로 귀환하였다. 탈북 전, 국경을 드나들며 밀무역을 하는 사람을 통해 남한 거주 누님의 생사 및 주소 확인을 하였으며, 서로 가족 사진도 교환하였다. 1994년 두 아들과 딸을 북한에 두고 단신 월남하였으며, 서울 도착 직후 큰누님과 동생들, 사촌들을 만났다. 백발이 다되어 만났지만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으며, 자식들 때문에 망설이기도 했으나 정말 탈출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새삼 들 정도로 기쁨이 컸다. 동생들의 늙은 모습에 서글픈 생각도 들었지만 모두들 무사히 살아 남아 잘 지내고 있음이 너무나 고마웠고, 많은 친척을 만나는 것이 반갑고 좋았다. 그러나 호의호식할 때마다 북한에 두고 온 자식들이 몹시 마음에 걸렸으며, 남한 사람들은 너무도 풍요로워서인지 낭비가 심한 것으로 느껴졌다. 남한에서의 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많이 보았으나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다. 탈북자 본인은 과거에 기독교인이었으며, 따라서 43년만에 본 남한에서의 예배가 마음을 새롭게 했다. 또한 탈북자 본인은 통일이 되어도 굶주린 북쪽 사람들과 호의호식하는 남쪽 사람들의 격차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둘 사이의 마찰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잘 사는 남쪽에서 북

39) 조창호, 「돌아온 사자(死者) 조창호의 북한 생활 43년」 (서울: 지호, 1995) 참조.

한을 끌어안고 다 같이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탈북자 본인이 남한에 와서 크게 느낀 것은 남쪽 사람들이 북한을 너무 모르고 있으며, 북쪽 사람들 또한 남한의 실상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의 선전에 속아 북한이 어떤 위치에 있는 지조차 모르면서 남쪽 사람에게 공연한 적개심만 불태우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 (6) 중국 거주 탈북자

남한 거주 아버지가 중국조선족에 부탁하여 북한 거주 아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내려와 4~5년간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남한으로 오기를 원했지만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주변사람들도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아들과의 재결합시 발생할 가족간의 갈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 다. 제3국 상봉 사례

북한당국은 북한 거주 가족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등지에서 남한 거주 가족과 접촉하거나 서신 교류하는 것을 반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제3국에서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묵인, 또는 허용하는 등 태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남북이산가족의 비공식·비공개 상봉이 증가하고 있다. 제3국에서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일본에서도 성사된 바 있다. 그러나 한·중수교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한 거주 가족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 상봉 알선업체를 통해 성사된다.

## (1) 신문준·신금단 부녀

1950년 1·4후퇴 당시, 남북통일을 앞둔 잠시 동안의 이별인 줄 알고 아버지는 온 가족을 북한에 남겨둔 채 후퇴하는 국군과 함께 남하하여 서울에 정착하였다. 1964년 동경 올림픽에 북한 거주 딸(당시 북한 육상 선수 신금단)이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 거주 아버지는 동경으로 건너가 딸과의 상봉을 염원, 당시 제일 올림픽 후원회장의 주선으로 동경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통해 헤어진지 14년만에 아버지와 딸이 극적으로 상봉하였다. 그러나 상봉 당시 북한 선수단은 신금단 선수의 동경 올림픽 참가 여부가 문제됨에 따라 동경 올림픽 참가를 거부하고 북한으로 철수하기 직전이었으므로 상봉 시간은 불과 7분 동안이었다. 또한 상봉 장소도 북한측이 요구한 조총련계 음식점이었으며, 조총련계 행동대원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 부녀 상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변을 의식한 대화만을 나눌 수 있었다. 이를 테면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고, 서로의 체제를 알리는 내용의 대화였으며, 아버지는 딸과의 귀엣말로 딸이 자유 대환으로 올 것을 적극 권유하기도 하였다.<sup>40)</sup>

짧은 시간 동안 상봉했던 부녀는 음식점에서 헤어진지 한 시간 후 북한 선수단이 떠나는 우에노(上野)역에서 다시 만나 3분여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고, 이별을 슬퍼하며 소리내어 우는 것으로 극적인 상봉을 끝냈다. 당시 국내 신문들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비인도성’을 규탄하는 소리가 매우 높았다.

40) 「경향신문」, 1964.10.10, 10.12; 「한국일보」, 1964.10.13 참조.

## (2) 한필성·한필화 남매

1950년 겨울, 가족을 북한에 남겨 두고 단신 월남한 오빠는 서울에 정착하였다. 1971년 2월, 대회 참가차 일본에 온 여동생(당시 북한 병상 선수 한필화)과 20여 년만에 전화 통화한 후 오빠가 동경으로 건너가 여동생과의 상봉을 모색하였다. 이들 남매의 상봉을 위해 재일거류민단이 나서 남매의 상봉 장소와 시간, 제한된 수의 입회인 등을 명시하고 북한측에 대해 남매 상봉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민단측의 제의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을 통해 “동생이 오빠가 찾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나러 와주기 바란다”<sup>41)</sup>고 밝혔을 뿐, 한 번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 선수단이 일본을 떠나는 날, 북한측은 일본 기자들만 참석시킨 기자회견을 통해 “여동생이 오빠를 만나려고 기다렸는데 오빠가 여동생을 찾아오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상봉을 단념한다”<sup>42)</sup>는 간단한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남매 상봉의 꿈을 무산시켜 버렸다. 당시 남매 상봉이 실현되지 못한 근원은 남북간 첨예한 이념·체제적 대립과 이로 인한 상호 불신이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남매간 전화 통화와 기자회견 때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당시 동경·서울간 국제 전화 통화에서 오빠는 동생에게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서울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말아. 내가 그 쪽 사정을 모르는 줄 아느냐, 지금 누가 널 감시하고 있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말아라”<sup>43)</sup>하고 말했다. 여동생 역시 기자회견에서 “오빠가 찾아주기를 기다렸다. 오빠가 나를 만나러 왔는데 오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음모가

41) 『중앙일보』, 1971.2.20.

42) 『중앙일보』, 1971.2.20.

43) 『중앙일보』, 1971.2.18.

있는 것이 아니냐”<sup>44)</sup>고 말했다. 결국 남매 상봉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상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상호 불신은 다음해에 찾아온 또 한 차례의 남매 상봉의 기회마저 막아버렸다.

1971년 남매 상봉의 꿈이 무산된 직후, 오빠는 1972년 삿뽀로 동계올림픽 때엔 당국이 허가만 해주면 다시 일본에 가서 여동생을 만나보겠다고 밝혔다.<sup>45)</sup> 그러나 막상 그 때에 이르자 남한 거주 오빠는 일본 삿뽀로 동계올림픽에 출전중인 북한 빙상 선수 여동생과의 상봉을 거부하였으며, 그 이유는 “더이상 북괴에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싫고, 또한 여동생이 오빠를 만났을 때 혹시나 실수를 해 앞으로 영원히 못만날까 두렵기 때문”<sup>46)</sup>이라고 하였다. 당시 오빠는 서울 가족 사진을 삿뽀로에 있는 여동생에게 보냈으며, 여동생도 북한의 가족 사진을 서울에 있는 오빠에게 보냈다. 그러나 여동생은 오빠의 가족 사진과 선물을 “오빠가 보낸 것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있다. 오빠가 보낸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받을 수도 볼수도 없다”<sup>47)</sup>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당시 오빠는 “부모, 동기간과는 헤어져 살 수 있어도 자유 없이는 살 수 없다”<sup>48)</sup>는 내용의 편지를 삿뽀로 한국 총영사에게 보냈으며, 이는 기자회견에서 공개되었다.

### (3) 부부 및 자녀 상봉<sup>49)</sup>

1.4후퇴 때 북한에 부인과 가족을 남겨두고 남편만 단신 월남하여

44) 위의 신문 참조.

45) 「중앙일보」, 1972.2.22.

46) 「한국일보」, 1972.2.5.

47) 「조선일보」, 1972.2.13.

48) 「한국일보」, 1972.2.13.

49) 우종창, “남북이산가족 상봉중개인 재미교포 ‘영 박’의 증언,” 『월간조선』 (서울: 조선일보사, 1995. 1), pp. 229~230.

서울에 정착하였으며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40여 년이 지난 후 북한에 두고온 부인과 자식이 그리워 재혼한 부인의 양해하에 중개인을 통해 수소문한 결과, 북한에 부인과 2남 1녀의 자식들이 생존해 있으며 70세가 넘는 부인은 재가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이 상봉을 적극 원해 중개인은 북경에서의 가족 상봉을 우선해 놓았으나 서울의 남편이 갑자기 상봉을 거부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 당시에 서울 거주 남편의 재혼한 부인은 “남편은 북한의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만날 형편이 못된다. . . . 솔직히 말해 내가 현재의 아내인데 40년이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새삼 들춰내면 상처만 주는 것 아니냐. 부탁을 하긴 했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게 지금의 심정”이라고 밝히었다.

#### (4) 형제 상봉

사례 150): 1990년대 초 남한 거주 아버지가 미국 거주 둘째아들에게 북한 거주 큰아들을 찾도록 지시하여 미국 거주 둘째아들이 재미교포 북한방문단 일원으로 북한에 들어가 큰형을 만났다. 둘째아들은 그후 세 차례나 더 방북하여 북한에서 요구하는 대로 트럭을 사주고 큰형의 집도 고쳐주는 등 형의 가족을 돌보았다. 그러나 방북 때마다 요구 사항이 많고 형의 생활은 나아지는 게 없으면서 둘째아들은 중개인에게 북경에서의 형과 아버지의 상봉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중개인은 평양에 가 형에게 동생의 뜻을 전하였다. 그 때에 형의 반응은 “잘 사는 동생덕에 생활도 좋아졌으나 이제는 동생을 만나게 끔찍하다. 동네주민들이 ‘반동분자는 잘먹고 잘사는데 우리는 이게

---

50) 위의 글, pp. 230~231.



뛰어나하며 감시를 심하게 해 오히려 사는데 불편이 따른다. 동생이 한번씩 올 때마다 감시가 심해지므로 더이상 북한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버지를 만난다면 자식된 도리로서 만나겠다”라고 하였다. 중개인으로부터 형의 반응을 전해 들은 동생은 아버지와 형의 상봉을 거부하였으며, 얼마후 아버지가 고령으로 사망한 이후 미국 거주 동생은 북한 거주 형과의 연락을 끊어 버렸다.

사례 251): 6.25 당시 의용군으로 강제로 징집 되어 나간 후 행방을 몰랐던 맏형이 살아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사망신고를 한후 제사까지 지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중국 조선족을 통해 형이 보낸 편지로 북한에 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몇 차례의 서신교환을 한 후 중국 연길에서 형과 상봉하였다. 상봉은 감격적이었으나 서로간의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 커 몹시 안타까웠다. 북한 거주 형은 아웅산사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 핵문제 등에 대해 북한당국의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

51) 공준필, “꿈에도 그리던 형님과 상봉,” 일천만이산가족재추진위원회, 「단절의 벽을 넘어서」, (서울: 일천만이산가족재추진위원회, 1996), pp. 17~28.

### Ⅲ.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

재결합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고 다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굳이 한정된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sup>52)</sup> 따라서 재결합으로 인한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재결합의 의미에 상봉 및 교류까지를 포함시킨다. 그러나 재결합으로 인한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상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재결합의 의미를 가족 또는 친족으로서의 법률관계를 회복 또는 형성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앞 장에서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로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북한에 가족과 친척을 두고온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sup>53)</sup> 그러나 실향민 응답자의 대부분(12명 가운데 8명)은 남북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관한 단적인 물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설사 상봉 및 재결합 초기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상호 이해와 아량, 혈육의 정으로 얼마든지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혈육간의 상봉·재결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상봉 및 재결합

52) 법원행정처, 앞의 책, p. 339.

53) 1998년 8월초, 「일천만 이산가족 재회 추진위원회」를 통해 실향민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의 연령대는 50대 4명, 60대 2명, 70대 5명, 80대 1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자 10명, 여자 2명이었다. 월남한 시기는 해방직후가 9명; 6.25동란기가 3명이었다. 응답자 모두가 가장 원하는 상봉 및 재결합대상은 형제자매였으며 50대 응답자들은 부모와의 상봉 및 재결합도 원하였다. 60대 이상의 응답자는 부모가 연로하여 돌아가셨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상봉·재결합 체험자들과 그 견해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사례 분석 결과와 실험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과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상의 법적 문제로 나누어 논하기로 한다.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법적 문제 및 해결 방안에 관해서는 여러 명의 법학자들에 의해 연구 논문이 발표된 바 있으며,<sup>54)</sup> 법조계에서도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현행법을 적용하여 사례별로 정리, 발표한 바 있다.<sup>55)</sup> 그러나 남북이산가족 상봉·재결합시 발생할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접근 및 분석에 의한 선행 연구 결과가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재결합시 발생할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사실상 남북 관계의 현실로 미루어 볼 때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은 빠른 시일내에 성사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비공식·비공개적 상봉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중시하여, 본 논문에서는 재결합시의 상호 갈등보다는 상봉시의 상호 갈등에 더 비중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54) 제성호,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신영호, 앞의 글; 신영호, “대량탈북사태와 사법적 대응,” 「법제연구」제12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7. 6), pp. 112~129; 김선이, “분단국가의 인적교류정책과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법적문제의 소고,” 「성균관법학」제5호 (서울: 성균관대학교, 1994), pp. 209~250.

55) 법원행정처, 앞의 책.

## 1.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

1983년 6월에 시작하여 138일 동안 계속된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보면서 온 국민은 방송 화면 속의 가족·친척 상봉이 마치 자신의 일인양 함께 기뻐했으며, 수십 년만에 상봉한 이산가족·친척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나 당시 상봉한 이산가족·친척들에 관한 뒷이야기는 그다지 밝지만은 않았다. 상봉 당시의 감격과는 달리 상봉한 가족·친척들 간에 크고 작은 후유증이 많았으며, 심한 경우에는 상봉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산가족이 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sup>56)</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수십년 만에 이루어질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재결합도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와 후유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 귀순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에 따르면, 상봉·재결합한 가족·친척들 사이에 이념적 갈등을 상정할 수는 없겠지만,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고 한다.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재결합이 자유로이 성사되는 단계라 할지라도 북한 주민들을 사상적·이념적으로 의심하는 남한 사회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다는 것이다. 사실상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및 재결합이 자유로이 성사되리라고 전망하는 남북화해·협력 단계에서 남북간 이념적 대립·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리라고는 낙관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및 재결합시 이념적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56) 1983년 7월 이후 국내에서 발간된 주요 월간 잡지, 1983년 7월1일자 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주요 일간지, 1993년 7, 8월의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찾아낸 상봉 가족·친척들의 상봉·재결합 이후의 뒷이야기는 매우 적었다. 이는 상봉·재결합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상봉·재결합 이후의 후유증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김일성 혁명사상과 주체사상 교육으로 세뇌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남한의 가족·친지들과 상호적응하는 과정에서 반자본주의적인 심각한 이념적 갈등을 겪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또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반된 이념에서 비롯된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남북이산가족은 상호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남북한이 50여년 이상 고수해온 상이한 이념은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재결합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화로 인한 남북이산가족 상호간의 문화·심리적 갈등이다.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북한 출신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 중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문화적 이질감이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한다.<sup>57)</sup> 남북한간에 심화된 생활 습관 내지 일상 생활 양식의 차이가 탈북 귀순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남한에서의 남북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친척 관계라는 데에서 보다 더 복잡하고 심각한 양상을 띠 수도 있다. 수십 년만에 이루어지는 극적인 혈육간 상봉이며 재결합인만큼 상호 기대감이 클 것이나,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소통 및 교감(交感)에 있어 장애를 느낀다면 실망 또한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재결합으로 인한 문화·심리적 갈등의 요인들은 다양하다. 남북 이산의 원인 내지 동기가 무엇인가, 그 과정은 어떠했으며 어떠한 유형의 남북 이산인가, 또한 이산의 결과로써 현재 남북의 이산가족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등에 따라 상호 갈등의 양상 및 정도가 다를 것이다. 또한 간절히 바랐던 남북

57) 이장호, 「북한출신 주민의 문화심리적 적응모형」 참조.

간 혈육의 상봉·재결합이 정신적·경제적·문화적으로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관계의 복잡성 및 정도에 따라 재결합 당사자간에 크고 작은 심리적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시 발생 가능한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에 관해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가. 남북간 이질화로 인한 갈등

##### (1) 서로 다른 의식구조 및 인성으로 인한 갈등<sup>58)</sup>

이질적 환경 속에서 상이하게 형성된 의식구조 및 인성으로 인해 상봉·재결합시 남북의 가족·친척들이 겪게될 갈등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먼저 정체감 내지 정체성 인식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및 재결합시 북한의 가족·친척은 자아정체감 내지 자기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낄 것이며, 남한의 가족·친척도 상대방 정체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느낄 것이다. 특히 남한의 가족·친

58) 본 논문은 남북이산가족의 남한에서의 상봉 및 재결합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가족·친척의 남한 가족·친척에 대한 적용상의 어려움에 보다 더 비중을 두기로 한다.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및 인성에 대해서는 이장호, 「북한출신 주민(탈북자포함)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서울: 성곡학술문화재단, 1997); 이장호,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이질성의 극복」; 김정규,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이해」, 「남북한 갈등구조의 해소를 위한 방안」(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제11회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1995); 서재진, 「북한주민의 인성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임순희, 「북한 새세대의 가치관」,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민성길 외,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통일사회로 가는 길」(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기념심포지움논문집, 1995) 참조.

척은 북한의 가족·친척에 대해 이념 및 가족·친척관계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

남북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남북간 이념 및 체제적인 극한 대립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므로 상봉·재결합 당사자들간에 상호 체제 및 당국을 의식한 심각한 정도의 이념적 갈등이 빚어질 개연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상봉·재결합 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이념에 대한 선입관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의 가족·친척에게는 이념 및 체제가 다른 남한에서의 상봉·재결합 자체가 심리적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및 재결합시 북한의 가족·친척은 남한 가족·친척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등 상대방 존재의 중요도를 비중 있게 고려할 것이며, 남한의 가족·친척은 자아관여도에 비중을 둘 것이다.<sup>59)</sup> 그러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있는 남한의 가족·친척들일 수록 자아관여도에 보다 더 비중을 둘 것이므로, 이로 인해 남북의 이산 가족·친척들은 상호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남한 문화는 상대방을 배척하는 문화이다. 따라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및 재결합 문제에 있어서도 이념 및 경제상의 이유로 북한의 가족·친척을 배척하려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으며,<sup>60)</sup> 이로 인해 단순·소박하고 인정이 많으며, 자존심이 매우 강한 북한의 가족·친척들과 갈등 및 불화를 초래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북한 주민들은 장기간 유일독재의 감시·통제체제하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단순하고 경직된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대인

59) 예를 들면 이산가족 당사자의 부인인 경우에 남편의 북한 거주 가족·친척과의 상봉 및 재결합을 꺼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장호 교수와의 자문간담회 결과보고서(1998. 7. 21) 참조.

60) 위의 보고서 참조.

관계에 있어 피해의식과 불신이 강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상봉·재결합시 북한의 가족·친척들은 남한의 가족·친척들에 대해 자신들의 사고와 태도를 개방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남한 가족·친척의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사고와 충돌이 잦을 것이다. 이는 남한의 가족·친척들에게 이중성으로 보여짐으로써 상호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될 북한 가족·친척의 가치관의 혼란과 이에 대한 남한 가족·친척의 물이해는 상호 적대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 가족·친척의 집단주의적 사고 및 행동 양식과<sup>61)</sup> 남한 가족·친척의 개인주의적 사고 및 행동 양식이 충돌하여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 가족·친척이 개인의 문제를 가족·친척 집단의 문제로 인식하고 가족·친척 집단에 의지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 한 다든가, 북한 거주시 집단에 속하여 누렸던 안정을 남한 가족·친척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찾고자 한다면 남북의 가족·친척들 사이에 심리적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남한의 가족·친척은 사적 소유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의 가족·친척은 사적 소유와 공동 소유 의식이 혼재하고 있음도 상호간 마찰과 갈등을 빚어낼 또 하나의 요인이라 하겠다.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은 남북이산가족간 의사소통의 주요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sup>62)</sup> 특히 남한 가족·친척의 외래어 및 상용화된 한자어 사용과, 우회 내지 완곡한 의사 표현 방식은 북한의 가족·친척으로 하여금 언어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할 뿐만 아니라, 열등감 내지

61) 이는 수동적 집단의존성, 또는 집단주의적 의존심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전우택 외,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서울: 오름, 1996), pp. 50~53 참조.

62) 한 설문조사에서 탈북자들은 남한생활 첫 6개월 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고방식의 차이 다음으로 언어의 차이였다고 답하고 있다.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제 1권 제2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p. 147.



모멸감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어린 나이에 남북으로 이산된 형제·자매가 극적으로 상봉·재결합하는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남북간 이질화로 인한 인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의식·무의식적으로 축적하게 되는 공감(共感)의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상호 적응이 더욱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 (2) 남북간의 경제 및 문화 생활 수준의 차이로 인한 갈등

70년대이래 남북간 경제 및 문화 생활 수준은 차이를 보여 왔으며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그 차이를 보다 더 심화시키고 있다. 남북 화해·협력단계에서도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재결합시 다음과 같은 문화·심리적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상봉·재결합시 북한의 가족·친척들은 자신들이 경제 및 문화 수준이 낮은 북한 출신이라는 자격지심에서 남한의 가족·친척들에 대해 거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 때에 남한의 가족·친척들이 경제 및 문화적인 우월감을 드러낸다면 북한 가족·친척들의 반감 내지 적대감을 야기할 수도 있다.<sup>63)</sup> 또한 북한의 가족·친척들은 남한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적 부족함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남한 가족·친척들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

63) 일부 귀순자들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11년간 무상의무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자긍심이 강하며, 오히려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사고 및 판단 수준이 낮다고 생각한다.

## 나. 이산의 원인 및 유형에 따른 갈등

### (1) 이산의 원인에 따른 갈등

이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38선 획정 후의 월남 및 월북, 6.25전쟁중의 피난 및 월북, 남북, 휴전협정 조인 이후의 탈북 및 월북, 남북, 그리고 재일동포 북송 등이 그것이며,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남북으로 이산된 가족·친척들의 상봉 및 재결합은 여러 가지 양상의 상호 갈등 및 심리적 부담을 야기할 것이다. 한 예로 북한의 가족·친척이 월북자, 또는 북송교포인 경우에 그들로 인하여 연좌제 등으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겪은 남한의 가족·친척은 그에 대해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을 것이며, 보상 심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심리를 북한의 가족·친척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표출할 수도 있다. 북한의 월남자 가족·친척<sup>64)</sup>도 월남자로 인해 북한에서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으므로, 상봉 및 재결합 과정에서 남한의 가족·친척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 이후 탈북한 귀순자의 북한 거주 가족 및 친척들은 귀순자로 인해 큰 고통과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상봉·재결합시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 거주 탈북 귀순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 예상외의 심각한 사태를 빚을 수도 있다.<sup>65)</sup>

64) 귀순자 조명철에 의하면, 북한의 월남자 가족들은 혁명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고, 지금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산 1세대의 수가 남한만큼 많지도 않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8. 5. 4;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들은 정치적·사회적으로 소외된 억압 대상이지만 이웃들에게서 소외당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1970년대까지는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았지만 1980년대부터 점차 달라졌으며 김정일의 광복·인덕정치 이후 차별대우가 덜해졌다고 한다. 매우 열성적이면 입당과 대학진학도 가능하지만 출세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혼 때에 제한이 따른다고 한다.

65) 탈북 귀순자의 증언에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산의 원인과 관련하여 이산 당시의 상황 내지 과정에 대한 오해로 인한 상봉·재결합 당사자들간 갈등도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변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 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인 이산을 한 것이었든가, 아니면 피난 중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잠시의 대열 이탈 등 전혀 의도한 바 없는 행동 내지 상황 여건의 우연함이 이산을 결과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이산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 내지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산을 다른 일방의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오해하는 경우, 상봉 재결합시 또 다른 양상의 상호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남북 이산을 다른 일방의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예로는 가장이 아들만 데리고 월남·월북한 경우, 이산 당시 병약한 상태였던 경우, 이산 당시 부부 사이가 나빴던 경우, 또는 이산 당시 신생아로 타인에게 맡겨졌던 경우 등이라 하겠다.

## (2) 이산의 유형에 따른 갈등

남북 이산의 유형도 다양하다. 부부의 이산, 부모자녀의 이산, 형제자매의 이산, 친척간의 이산, 또는 단독 이산, 복수 이산 등이 그것이며 이러한 유형에 따라 상봉·재결합 당사자들간 갈등의 양상도 다를 것이다.

부부 이산의 경우,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이 모두 결혼을 한 상태에서 상봉 및 재결합하게 되면 이로 인한 도덕적·심리적 갈등이 클 것이다. 이산 후 부부가 각각 재혼을 한 경우에는 재혼하여 이룬 가족을 의식하여 쉽게 상봉·재결합을 결정하지 못하고 가족, 특히 배우자의 양해를 구하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가족내 불화가 야기될 수도 있다. 또한 부부 상봉인 경우, 상봉 직전·후와는 달리 시간이 흐

를 수록 각각의 재혼한 배우자들이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또다시 이산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장이 단신 월남하여 재혼한 경우에 남한 거주 가정은 북한 거주 가족과의 상봉·재결합을 원하나 재혼한 부인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부모·형제와 떨어져 단독으로 이산되어 소외된 삶을 살아오다 가족 상봉을 한 경우에는 상봉·재결합한 가족들에 대해 혼자 남겨져 고생한 것에 대한 원망과 피해의식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정신적 내지 물질적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클 수도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 혼자 떨어져 이산가족이 되었다가 나머지 가족들과 상봉한 경우에는 재결합을 해도 가족들과의 융화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2명 이상 복수로 이산한 가족들은 혼자 떨어져 이산되었던 가족에 대해 일종의 가해자적인 심리적 부담을 느낄 것이며, 단독으로 이산되었던 가족이 원망과 함께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 이상의 갈등을 느낄 수도 있다.

#### 다. 재결합이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에 겪게될 갈등

수십 년 동안 염원해 온 혈육간 상봉·재결합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염원하고 기대한 만큼 상호 실망이 클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 (1) 경제적 지원 문제로 인한 갈등

남한의 가족·친척에 대해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 또는 요청했으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북한 가족·친척의 남한 가족·친척들

에 대한 갈등 및 불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남한에서 가족·친척과의 상봉을 체험한 탈북 귀순자들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상봉·재결합시 북한의 이산가족들은 남한의 가족·친척에 대해 정신적·경제적인 기대, 또는 의존 심리가 강할 것이며, 특히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충족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한의 가족·친척이 지원을 꺼릴 경우에는 실망 내지 좌절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66)</sup> 남한의 가족·친척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가족·친척은 북한의 가족·친척이 지나친 기대 심리에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부담 및 갈등을 겪게될 것이다.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대해서도 상봉한 가족·친척의 살림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봉 이후의 재회를 부담스러워 할수도 있다. 이는 남한의 가족·친척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상봉 대상이 친척인 경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 (2) 상봉·재결합한 가족의 쇠잔함과 무능력에 대한 실망과 부담

수십 년을 헤어져 살아 온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상봉의 순간에야 서로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에 상봉·재결합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너무 연로하여 쇠잔해져 있거나, 병들어 정신적·육체적으로 무능력해져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기대 정도에 따라 상봉 자체가 충격일 수도 있으며, 특히 부모와 자녀의 상봉시에 그러할 것이다. 남북 이산 후 재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상봉하는 경우에는 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며, 특히 어머니와 아들의 상봉인

66) 제3국 상봉중개인들에 의하면 제3국에서의 상봉이 실현되더라도 남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면 더 이상의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북한 가족이 적지 않으며, 남한 가족들 중에는 북한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담스러워 재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재혼한 어머니의 도덕적 갈등 및 부담과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실망 내지 원망이 야기될 수 있으며 상호 갈등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재혼한 어머니의 가족내에 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상봉한 가족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거나, 상봉 가족 양쪽이 모두 살림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실망이 크고 부담을 느낄 수 있다.

### (3) 생면부지의 친척 상봉시 야기될 수 있는 갈등

남북이산가족 상호간에 생면부지의 친척을 만나는 경우, 상호 교감 내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이로 인해 야기될 상호 실망과 갈등이다. 남북간에 이산 1세대와 이산 3·4대가 상봉하는 경우, 특히 북한거주 이산 1세대와 남한거주 이산 3·4대가 상봉하는 경우에 상호 교감 내지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핵가족 사회에서 성장한 남한의 이산가족 3·4대들은 북한 거주 친척들과의 만남을 무의미하게 여기거나 귀찮아하며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상호 실망과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특히 장기간 철저하고 교조적인 이념 교육을 받은 북한의 이산 3·4대와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의식구조를 지닌 남한의 이산 3·4대가 만나면 충돌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으며, 상호 적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라. 재결합시 발생할 법적 문제 처리 과정에서의 심리적 갈등

남북의 이산가족이 재결합하게 되면 가족 또는 친족으로서의 법률 관계가 회복되거나, 또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는 호적, 증혼, 상속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현실적인 이해 관계가 얽힌 문제이므로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들간 심리적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1) 가장이 단신 월남하여 재혼한 경우

단신 월남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가장이 북한 가족과 상봉·재결합하게 되면, 이는 양쪽 가족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될 것이며, 북한 가족의 입적 문제 등으로 가족간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아버지가 북한의 자녀와 상봉한 경우, 자녀의 입적 문제가 아버지의 남한 가족과 상봉한 자녀간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아버지의 남한 가족내에 불화가 야기될 수 있으며, 아버지와 북한 자녀 사이에서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2) 부부 상봉의 경우

상봉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은 재혼하지 않고 다른 일방은 재혼한 상태에서 만났을 때, 재혼하지 않은 쪽에서 혼인 관계 회복 내지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원하게 되면 재혼한 쪽의 가족내에 불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부인이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한 남편과 상봉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의 배우자(부인)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남한의 배우자(남편)와 동거하기를 원할 경우, 이는 법률상으로도 가능하므로 발생 개연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가족간에 심리적인 갈등이 심각할 수도 있다.

### (3) 재산상의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아버지와 자녀가 상봉하여 입적이 되었을 경우, 상속 등의 문제로 인해 이복 형제들간의 불화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에는 상봉·재결합한 자녀가 가족내에서 소외되는 등 정신적·물질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또한 남한의 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제외한 채 상속 재산을 정리한 경우, 그 의도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호이해 부족으로 인한 가족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 2.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상의 법적 문제<sup>67)</sup>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호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법적 문제이며, 호적 취득 및 정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적 문제는 중혼 관계와 상속 관계이다.<sup>68)</sup>

호적은 국민 각 개인의 신분관계, 시간별 신분변동사항 등이 기재된 공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신분 관계가 형성·확정되고, 상속 등 재산 관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sup>69)</sup> 호적 관계는 재결합 당사자들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중혼 관계는 이산 1세대의 점감(漸減) 추세로 문제 발생의 개연성

---

67)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상의 법적 문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제성호,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신영호,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신영호, “대량탈북사태와 사법적 대응,” 「법제연구」 제12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7. 6); 김선이, 앞의 글; 법원행정처, 앞의 책. 이 자료들 가운데 법원행정처 발간 「북한의 가족법」 제6장 “통일과 가족법”을 기본 자료로 하여 문제점들을 정리하였다.

68) 설문조사에 응답한 실태민들은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문제로 중혼관계를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상속관계, 부모자녀 관계의 순으로 답하였다.

69) 법원행정처, 앞의 책, p. 360.



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일단 발생하게 되면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부부가 이산하였다가 재결합하게 되는 경우, 쌍방이 모두 독신으로 남아있지 않는 한 중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상속 문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만 확인되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산가족의 재결합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sup>70)</sup> 상속 관계는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문제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이해관계가 얽히는 문제이며, 특히 경제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므로 문제 발생 빈도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가. 호적 관계

(1) 월남자가 북한의 가족과 재결합하는 경우, 월남자가 남한에서 가호적 또는 호적을 취적하면서 누락, 또는 제적시켰던 가족의 입적 및 호적 부활 기재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월북 또는 남북으로 인해 북한에 거주하던 자가 남한의 가족과 재결합하는 경우, 월북 및 남북자의 호적 기재 정정 내지 호적 부활 기재 문제가 발생한다.

(2) 월남자의 가호적 취적시 허위 사실 신고로 인해 재결합시 발생할 법적 문제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자를 자신의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도 혼인한 부부인 양 가장 신고한 경우, 북한 거주시 혼인했던 월남자가 남한에서의 재혼시 북한에서 이혼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월남자가 북한에서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취적한 경우 등 호적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호적 정정 절차에 의해 진실을 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70) 예를 들어 이산가족 당사자나 남북한 거주 후손들이 법적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 나. 중혼 관계

(1) 북한 거주 배우자에 대한 부재 신고나 실종 신고가 없이 재결합하게 되면 중혼 관계에 해당한다.<sup>71)</sup> 또한 북한에서 혼인했던 월남자가 북한에서 이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남한에서 재혼한 경우, 북한의 배우자와 재결합하게 되면 중혼 문제가 발생하며, 이 때 남한에서의 혼인이 중혼에 해당한다.

(2) 부부 중 한 쪽이 월남하여 재혼한 상태에서 북한의 배우자와 재결합하게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한 다음 재혼한 경우<sup>72)</sup>를 제외하고는 중혼 문제가 발생한다.<sup>73)</sup> 북한의 배우자를 잔류자<sup>74)</sup>로 가호적 또는 호적에 기재하고 부재 신고를 받아 혼인을 해소한 다음 재혼한 상태에서 북한의 배우자와 재결합하게 되는 경우, 부재 신고의 취소와 함께 중혼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부재 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부재 신고의 취소는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후혼

71) 최근 국세청 심사위원회는 “배우자가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돼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실종신고나 부재신고가 없었으면 상속세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연합통신」, 1998. 7. 6. 따라서 이후에도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실종 신고, 또는 부재 신고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재결합시의 중혼 관계 발생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산 1세대의 감소로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72) 재판상 이혼에 의한 혼인 해소 후의 재혼인 경우에는 북한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부활되지 않고 법률상의 재결합은 인정될 수 없다. 신영호, “남북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p. 44.

73) 재판상 이혼을 한 다음 재혼을 하였어도 북한의 배우자가 독신으로 있었고, 이산 이전 혼인 관계의 존재와 유효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상속이나 부양 청구를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북한의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원행정처, 앞의 책, p. 345.

74) 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를 뜻한다.

당사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악의일 경우에만 중혼 관계에 해당한다.<sup>75)</sup> 또한 월남자가 북한에서의 혼인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고 취적한 후 재혼을 한 경우, 북한의 배우자와 재결합하게 되면 중혼 문제가 발생한다. 탈북자가 북한에서의 혼인 관계에 대한 법적 정리가 없이 남한에서 재혼을 한 경우도 북한의 배우자와 재결합하게 되면 중혼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재혼이 남한 당국의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재혼 당사자는 물론 당국의 입장에서조차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3) 부부 중 한 쪽이 월북 또는 납북된 후 다른 한 쪽이 재혼한 상태에서 북한의 배우자와 재결합하게 되는 경우, 북한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혼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북한의 배우자를 민법상 실종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고 혼인을 해소한 다음 재혼한 상태에서 북한의 배우자와 재결합하게 되는 경우, 실종 선고 취소와 함께 중혼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실종 선고의 취소는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후혼 당사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중혼 문제가 발생한다.<sup>76)</sup>

(4) 부부 이산 후 어느 한 쪽이 타인과 부부의 명의로 동거 생활을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결합하게 되는 경

75) 그러나 후혼 당사자 어느 일방이 악의라 하더라도 재혼한 월남자와 북한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채성호,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pp. 245~246; 신영호,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p. 45.

76) 이 경우에도 후혼 당사자의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재혼 당사자와 북한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법원행정처, 앞의 책, p. 348.

우, 이 때에는 증혼 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사실혼으로 형성된 가족 관계 유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다. 상속 관계

(1) 남한의 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제외한 채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 재산을 정리한 경우에는 북한의 상속·피상속인에 의해 상속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북한거주 상속인이 호적상 잔류자로 기재되어 있고, 재결합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잔류자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 관계가 처리되어야 한다.<sup>77)</sup> 이러한 절차 없이 남한거주 상속인들만이 상속 재산을 분할한 것은 무효이다.<sup>78)</sup> 따라서 북한거주 상속인들은 민법 제999조에 따라 소정의 상속 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다음 재결합한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sup>79)</sup> 또한 북한의 가족이 사망 신고, 또는 실종 신고에 의하여 제척되었으나 생존하여 있는 경우, 호적 정정 또는 실종 신고 취소가 있으면 남한의 가족들에 의하여 개시된 상속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북한 거주 가족은 남한의 가족들 및 그들로부터 재산을 취득

77) 잔류자로서 부재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며, 재결합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이들은 상속재산을 취득하며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실종 신고나 부재 선고를 받은 자라면 그 취소에 의하여 상속권을 회복하게 된다. 신영호, “대량 탈북사태와 사법적 대응,” p. 127.

78) 신영호,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p. 48.

79) 제척기간의 적용으로 인해 상속 회복을 주장할 수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의 상속권 주장은 인용되어야 한다고 봄으로, 따라서 상속 재산이 분할되기 전이라면 그 분할에 참가할 수 있고, 이미 분할된 경우라면 제1014조를 유추하여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신영호, “대량 탈북사태와 사법적 대응,” p. 127. 이러한 견해는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의 상속 문제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한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sup>80)</sup> 북한의 가족이 사망 신고 또는 실종 신고에 의하여 제척되었으나, 다른 시점에 사망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북한 거주 상속인들은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2) 부재 신고 또는 실종 신고 후 남북에 각각 법정 상속인이 현존하고, 또 피상속인이 그 신고 후의 경제 활동에 의해 새로이 축적한 부를 상속인이 상속할 경우, 그 피상속인과 동일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던 상속인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sup>81)</sup>

(3) 남한 거주 피상속인의 중혼으로 인해 이산 2·3세대들 사이에서는 상속과 관련한 법률적 지위 회복을 위한 분쟁이 적지 않을 것이다.

---

80) 법원행정처, 앞의 책, p. 352.

81) 김선이, 앞의 글, p. 227.

## IV. 대응 방안 모색

### 1.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 해소 방안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재결합은 당사자들에게 있어 일종의 문화·심리적 충격이다. 혈연 관계는 맺어져 있으나 수십 년 동안을 만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문화속에 살아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봉 및 재결합 순간의 감격과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남북의 가족·친척들은 서로 간의 문화·심리적 차이로 인해 상호 적응의 과정에 있어 혼란과 갈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한 상호부담 내지 갈등이 빚어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와 불신이 깊어져 서로 마음의 벽을 쌓거나, 다시 헤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봉·재결합한 가족 및 친척들에게 있어 불행한 일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내적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재결합을 염원하는 실향민들은 상봉 및 재결합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상봉·재결합 초기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족·친척간 혈육의 정과 사랑, 그리고 남한 가족·친척의 이해와 포용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봉·재결합이 현실화되면 앞에서 논한 여러 가지 문제들 외에도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사회 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내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가. 심리 상담 및 조언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및 재결합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반응은 가벼운 충격에서부터, 충격으로 인한 죽음까지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봉·재결합을 전후해 상봉·재결합 당사자들이 만남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및 조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봉·재결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상봉·재결합 당사자들간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 상담 및 조언은 특히 북한의 가족·친척과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남한의 사회·문화에 생소한 북한의 가족·친척과 고령의 이산가족일수록 상봉·재결합의 충격, 또는 상호 적응상의 어려움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상봉·재결합 당사자들의 상호 갈등 해소 및 적응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조언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 봉사 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나. 상호 적응 도모

(1) 상봉 이전에 남한의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상봉 관련 주요 사항들을 주지시킨다. 특히 남북한간 이질적 요소와 동질적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북한 주민의 가치의식, 심리적 특성, 언어, 일상 생활 등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준다. 또한 상봉 및 재결합 당사자들간 사회·문화적 이질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상호 갈등의 요소들과 해소 방법들에 대해 인식시킨다.

(2) 상봉 후 재결합 이전에 남북 이산가족의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남북이산가족 3·4대

의 상호 이해와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통일 및 남북 사회 통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 상봉 및 재결합의 경우에는 이산 후 형성된 가정의 기존 질서와 평화가 파괴되지 않도록 상호 가족간 이해와 신뢰 형성을 도모하며, 상봉·재결합 당사자들의 상호 적응 및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사회 통합에 적극 기여하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3) 남한 이주 북한 이산가족에 대한 적응 교육: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가족·친척들의 남한 가족·친척들과의 상호 적응과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재교육 내지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 이주 직후에는 남한 사회 전반의 실태와 문화적 이질성 및 동질성을 인식시키며, 일상적인 경제 및 문화 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언어 교육에 비중을 둬으로써 남북이산가족 상호간의 의사 소통에 있어 불편함을 제거하며, 남한 사회에 대한 언어적 적응을 돕는다. 또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의식전환과 생활태도확립을 위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남한 주민에 대한 불신해소와 남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함양을 도모한다. 전후세대, 특히 북한 이산가족 3·4세대의 개인적인 정체감 형성을 돕기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한다.

(4) 남한 주민의 동참 유도: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과 관련하여 계몽·교육함으로써, 남북 이산가족의 상호적응 및 남한 이주 북한 이산가족의 남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의 이산가족에 대해 동포애적 사랑과 관심의 태도를 갖도록 하며, 경제·문화적 우월감을 지양하도록



한다. 또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재결합은 궁극적으로 통일 및 남북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임을 주지시킴으로써 남북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한다.

#### 다. 정책적 지원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및 재결합시 발생할 상호 갈등 및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법·제도 및 정책적 차원에서 대비책을 강구한다. 민간 차원에서 담당·운영하는 남북 이산가족의 상호적응교육과 남한 이주 북한 이산가족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재교육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상봉 및 재결합 후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의 이산 가족들을 위해 직업 훈련 및 취업과 직장 알선, 주택 제공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상봉·재결합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영세한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친척과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생활 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남북한 경제·사회 통합을 지향한다는 기본 취지하에 상봉·재결합 당사자를 위한 이산가족 특별지원법을 마련한다. 또한 남북이산가족 상봉·재결합으로 인한 정부 차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 후, 북한 가족·친척의 남한으로의 거주지 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하며,<sup>82)</sup>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이산가족들이 북한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수립한다.

82) 우리 나라에서 독일식의 전격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남북한 주민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재무부 보고서, 「통일 2주년을 맞은 독일경제의 평가 및 시사점」(재무부, 1993.1.28).

## 2.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상의 법적 문제 대응 방안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재결합 이전이라도 북한 거주 가족·친척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면 남한의 가족·친척에 의해 실종 및 부재 신고 취소 청구가 빈발할 것이며, 재결합시에는 부재 및 실종 신고 취소에 따라 부부·친자·상속 관계 등에 크고 작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또한 재결합으로 인해 가족 또는 친족으로서의 법률 관계가 회복되거나, 또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재결합 당사자들 간에 갈등 및 부담이 야기될 수 있으며, 현행법에 의한 문제 해결이 당사자들 상호간에 충분히 이해, 납득되지 못하고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형성하게 된다면 또 다시 헤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한에서의 재결합이라는 여건에서부터 비교적 불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있어 남한의 현행법에 의한 문제 해결 결과는 이해와 납득이 더 어려울 수 있으며, 사실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남한의 이산가족도 북한 거주 가족·친척과의 재결합으로 인해 가족 관계 및 재산 관계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행법을 기초로 재결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해석론상의 차이로 인해 법정에서 대립하는 경우도 빈발할 것이다. 따라서 재결합시 발생할 법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현행법 적용이라는 형식 논리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주요 기본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가족 관계 및 재산 관계상의 법적 문제 대응 방안을 논하고자 하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산가족문제 관련 주요법령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 가. 이산가족문제 관련 주요법령

### (1) 미군정 법령 제179호

1948년 4월 시행된 ‘미군정법령’ 제179호는 남북한이 통일될 때까지 북위38도선 이북에 본적을 두고 이남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호적의 임시조치를 규정한 바, 거주지를 기본적으로 정하여 취적신고를 하면 가호적을 편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호적제도는 38선 획정에 따른 월남자 가족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으나, 그 후 6.25전쟁 시기의 월남자 가족도 활용하였으며, 1962년 12월 ‘개정 호적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미 편제된 가호적은 현행 호적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 (2) 민법상의 실종선고 제도

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거한 이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일정 기간 생사불명인 상태가 계속될 경우,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자에 대한 사망을 선고하여 실종자의 사법적(私法的) 법률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월북자나 납북자의 사법적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sup>83)</sup>

민법상의 실종선고 절차를 밟아 이산가족 문제를 정리한 경우는 실종 선고 절차를 취소함으로써 실종선고자의 생존·사망 시기 확인에 따른 기존 법률 관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실종선고를 취소함에 따라 종전 법률 관계 부활, 즉 신분 관계가 부활하며 상속 재산이 본인에게 환원됨이 실종선고 취소 효과의 기본 원칙이다.<sup>84)</sup>

83) 신영호,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p. 37.

84) 김선이, 앞의 글, p. 225.

### (3)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7년 1월 제정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법률 중 가장 중요한 법률로서 이산가족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sup>85)</sup> 이 법은 미수복지구에서 이남지역으로 옮겨 새로이 취적한 자 중 미수복지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와 이남지역에서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에 관한 특례 및 이중호적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잔류자란 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를 뜻하며, 부재자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8일 사이에 이남지역에서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뜻한다. 잔류자임이 분명할 때에는 법원은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 선고를 하여야 하고, 부재 선고를 받은 자는 호적에서 제적되며, 호주 상속, 재산 상속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 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제3조, 제4조). 또한 부재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사실, 또는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의 증거가 있거나, 잔류자가 거주하는 미수복지구가 수복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 선고가 취소되며, 다만 부재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조 제1항).

### (4)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분단상황하에서의 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법적 문제와 해결방

85) 이산된 가족의 사법적(私法的)법률 관계는 민법상의 실종선고제도에 의해서도 정리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어 그 활용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마련된 법률이다. 신영호,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p. 37.

안을 다룬 기존의 연구결과물들은 현행법을 적용하고 있다. 법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현행법 적용의 근거는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로 설명될 수 있다.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국내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sup>86)</sup>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견해, 외국인으로 보는 견해, 특수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등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 태도는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을 근거로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므로, 이와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며 북한주민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다. 향후 헌법 개정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 전까지는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이산가족인 북한 주민에 대하여 우리의 현행법이 적용된다.

#### 나. 법적 문제 해결의 기본 고려 사항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검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sup>87)</sup>

첫째, 인도주의 원칙 내지 정신에 입각한 신중한 법적 처리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법에서의 가족 관계, 남한 법에서의 가족 관계 등 남북한 양측의 기존 법률 관계 내지 기존 질서를 유지하

86) 법원행정처, 「북한의 가족법」, pp. 331~333.

87) 고려대학교 법학과 신영호 교수의 견해 참고 (1998. 6. 25. 초청세미나); 신영호,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pp. 50~51 참조.

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각기의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유지되어 온 기존의 법률 관계에 인위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산으로 인해 새로이 형성된 가족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 파괴한다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및 정신에 어긋난다. 또한 남북한 양측이 50여 년 동안 형성·유지해 온 법률 관계를 무시하고 단순히 법적 논리로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못하다.<sup>88)</sup>

둘째, 재결합 당사자의 자유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법률상의 재결합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재결합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존중한다.

셋째, 중혼 및 상속 등 개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기존 질서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질서 유지를 기함에 있어 발생하는 부작용은 인도주의 및 당사자 의사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을 모색한다.

넷째,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여 이산가족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가족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89)</sup>

다섯째, 분단과 같은 불가항력적 조건을 참작하여 법적 권리의 적용 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며,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88) 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처리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독일, 중국·대만의 경우, 기존 법률 관계나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통일과 가족법,” 법원행정처, 앞의 책, pp. 344-355에서 “다른 분단국가의 입법례” 참조.

89) 설문조사에 응한 실향민들은 법적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족간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내부해결을 우선 모색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다. 재결합시 발생할 주요 법적 문제 대응 방안

### (1) 호적 문제 대응 방안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호적 관계의 법적 정리는 기존 가족 관계의 안정성 보호와 유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단신 월남하여 재혼한 아버지의 경우, 기존 가족 관계의 보호를 이유로 북한의 자녀들과 재결합하기를 꺼리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 염원을 존중한다면, 기존 가족 관계의 안정성을 보호·유지하면서 북한 거주 자녀들과의 재결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 예로 이산 전 배우자의 복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녀만 복적시킬 경우 법 적용상의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이 있으나, 자녀의 경우에는 상속 문제 처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 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복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90)</sup> 북한 거주 자녀가 성을 바꾸었거나 타인의 자녀로 입양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현행법에 따라 구제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호적 취득 및 부활 기재, 호적이재 정정 등과 관련한 법·행정적 절차의 체계화 및 간소화를 통해 재결합 당사자들의 정신적 내지 법·행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 (2) 중혼 문제 대응 방안

불가피하게 발생할 중혼의 효력을 통상의 중혼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90) 민족통일연구원, 「남북교류 본격화시 법적문제와 대처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31.

검토가 필요하다. 한 예로 이산 부부의 쌍방이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혼(原婚)의 효력을 인정하며, 이산 부부의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前婚)의 효력을 부인하고 후혼(後婚)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단서는 “부재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분단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재결합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을 고려하여 이산 후의 후혼을 ‘선의로 한 법률 행위’로 해석하고 전혼의 부활을 배제함으로써 중혼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sup>91)</sup> 그러나 전혼 상대인 북한 거주 배우자가 독신으로 있을 경우, 북한 거주 배우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 및 부양 청구의 허용, 또는 보상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 외에 장기간의 민족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중혼 관계 발생을 용납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해 혼인 효과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민법의 부칙에 특칙(特則)을 둔과 함께 경과규정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잠정적으로 중혼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sup>92)</sup>

탈북자의 중혼 문제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탈북 귀순후 허위 호적 기재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당국의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탈북자의 재혼도 문제 발생시

91) 민족통일연구원, 「남북교류 본격화시 법적문제와 대처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31; 부재선고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와는 달라서 잔류자와 재결합하더라도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이상 부재선고를 취소할 수 없고 따라서 후혼은 취소할 수 없어 후혼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선이, 위의 글, p. 227.

92) 제성호,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p. 250.



의 적절한 법적 대책이 마련된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인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의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할 것과 가족법상의 1부1처제의 적용을 그 처리의 기본 방침으로 삼아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 방안의 하나이다.<sup>93)</sup>

### (3) 상속 문제 대응 방안

분단이라는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한 이산이었으므로 상속 문제에 있어 어느 한 쪽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 회복 청구권은 침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남북이산가족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어 사실상 남북이산가족은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상속 회복 청구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나 민법부칙에 경과규정을 둬으로써 민법 제999조 제2항,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sup>94)</sup>

현행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남한 거주 상속인들은 남북 간 경제 수준의 차이와 개인소유제도의 차이로 인해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높으며,<sup>95)</sup> 북한 거주 상속인들도 제척 기간 적용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데 대한 불만이 클 것이므로, 이러한 불만을 해소할 대

93) 신영호, “대량 탈북사태와 사법적 대응,” p. 126.

94) 제성호,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p. 258.

95) 법원행정처, 앞의 책, p. 350.

책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남한 거주 상속인들에게 민법 제1008조의 2에 의한 기여분을 인정한다든가,<sup>96)</sup> 북한 거주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은 인정하되 대만의 경우와 같이 상속 시효, 상속 액수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sup>97)</sup> 또는 북한 거주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남한 거주 상속인들에게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북한 거주 상속인들을 부양할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재결합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권을 부정하거나 부양의무만을 인정하고,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이내에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sup>98)</sup> 북한 거주 상속인에 대해 제척기간의 보편 적용 등 기존의 상속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북한 거주 상속인의 상속 회복 청구권 유효 기간을 실종 및 부재 선고 취소 후 수년으로 특별 입법 조치하여 현행법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이 외에 이산 전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산 전의 배우자에게는 남편의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sup>99)</sup>

요컨대 재결합 당사자들간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실정법에 따른 현행 법집서를 존중하되 일률적인 법적용보다는 이산가족

96) 상속 제도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과,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즉 상속 재산의 형성 및 증가에 대한 상속인들의 기여를 평가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따라서 경제·사회적으로 동일한 상속분을 상속한다는 것은 상속제도의 취지에도 맞지않고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상치될 것이기 때문에, 1990년 개정된 친족법 제1008조의 2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여분 조항에 의거하여 재결합 후의 상속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성호,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p. 255.

97) 신영호,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p. 49.

98) 법원행정처, 앞의 책, p. 354.

99) 민족통일연구원, 「남북교류 본격화시 법적문제와 대처방안」, p. 32.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하에 가족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V. 결 론

남북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연구 논의에서는 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 실현 방안이 주제로 다루어졌으며, 본 논문의 주제인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성과는 비교적 부진한 편이었다. 남북 관계의 현실로 보아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이산 1세대の高령화와 사망을 점증에 따라 재결합의 의미마저 희석되어 가고 있으므로 연구 자체에 큰 의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외교 환경의 긍정적 변화와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 「국민의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 정책 추진 등에 근거해 보건대,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 성사를 비관적으로만 전망할 수 없으며, 또한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인 가족권을 상실한 채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상기한다면, 남북이산가족 재결합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실천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는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상정한, 재결합으로 인한 문제점 도출과 대책 및 해결 방안의 모색은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관련된 연구 논의의 주요 주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들은 이산가족의 가정의 평화는 물론, 남북한의 내적 통합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재결합으로 인한 문제점 도출과 대책 및 해결 방안의 모색은 남북한 사회 통합 내지 내적 통합의 차원에서,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할 문제와 대책에 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재결합시 발생할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은 남북간 이질화로 인한 문화·심리적 갈등, 이산의 원인 내지 동기 또는 이산의 유형 및 이산의 결과로 인한 갈등, 혈육과의 재결합이 기대한 바에 못미치는 경우에 겪게될 심리적 갈등, 재결합시 발생할 법적 문제 처리 과정에서 겪게될 심리적 갈등 등으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가족 관계 및 재산 관계상의 법적 문제는 호적 관계, 중혼 관계, 상속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와 실험인 1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본 바,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에 있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사회·문화적 이질화로 인해 상호 적응의 과정에서 겪게될 문화·심리적 갈등, 둘째 남북한의 경제 및 문화적 생활 수준의 차이로 인해 겪게될 거리감 내지 위화감, 셋째 재결합시 발생할 법적 문제 처리 과정에서 상호 이해 관계의 복잡성 및 정도에 따라 겪게될 심리적 갈등, 넷째 부부 이산가족의 경우에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이 모두 재혼을 한 상태에서 상봉·재결합하게 될 때 겪게될 도덕·심리적 갈등, 다섯째 핵가족 사회에서 성장한 이산가족 3, 4대들이 북한 친척들과의 만남을 무의미하게 여기거나 귀찮아하며 잘 어울리지 않으려는 경우에 느끼게될 상호 실망감과 갈등 등이 그것이다.<sup>100)</sup> 가족 관계 및 재산 관계상의

100)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탈북자들은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으로, 사고방식·가치관·문화·생활습관·풍습의 이질감, 빈부의 격차에 대한 반말감·경제적 차이·상대적 빈곤감·남한의 물자낭비 태도, 그리고 사상 및 이념의 차이와 대립 등을 지적하고 있다.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pp. 157~158 참조.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결합 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는 중혼 문제와 상속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들로 지적되었다.

재결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도 문제점 분석과 마찬가지로 둘로 나누어 논하였다.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 해소 방안은 심리 상담 및 조언, 상호 적응 도모, 정책적 지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가족 관계 및 재산 관계상의 법적 문제 대응 방안은 먼저 법적 문제 해결의 기본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 호적 문제 대응 방안, 중혼 문제 대응 방안, 상속 문제 대응 방안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념 및 문화·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봉·재결합 당사자들의 충격과 상호 갈등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회 통합을 지향한다는 기본 취지하에, 상봉·재결합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조언, 상봉·재결합 당사자들의 상호 적응 및 남한 이주 북한 이산가족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제도 및 정책적 차원에서의 대비책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도주의, 재결합 당사자의 의사 존중, 기존 질서 유지 등을 기본 원칙 내지 정신으로 한 현행법의 신축적 적용과, 장기간의 분단 상황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해결 방안은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사회 통합 내지 내적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한 타율적인 갈등 해소를 기대·요청하기보다는 가족 내부에서의 자율적인 갈등 해소를 모색하고, 현행법 적용이라는 형식논리적 접근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인도주의, 재결합 당사자의 의사 존중, 기존 질서 유지 등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우선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도출과 갈등 해소 및 법적 문제 대응 방안은 초보적인 연구 결과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초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 분석을 위한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분석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심층 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로서 여러 관점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책 및 대응 방안 모색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시하거나, 또는 사례별 법적용을 나열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기본 방향 내지 기본 고려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쳤다. 대책 및 대응 방안은 상봉·재결합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의 작용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소박한 기대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재결합에 따르는 문제점 상정과 대책 수립의 기본 방향 내지 원칙 설정에 있어 본 연구 결과가 나름대로의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바라며, 또한 앞으로 진행될 후속 연구에 기초 자료로서 기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참고 문헌

### 1. 단행본

-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제2권. 서울: 대한적십자사, 1986.
- 민족통일연구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자유 왕래·접촉 실현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민족통일연구원. 「남북교류 본격화시 법적문제와 대처방안」. 서울: 민  
족통일연구원, 1992.
- 법원행정처. 「북한의 가족법」. 서울: 법원행정처, 1998.
- 서재진.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이장호. 「북한출신 주민(탈북자 포함)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서울: 성곡학술문화재단, 1997.
- 일천만 이산가족 재회 추진위원회. 「단절의 벽을 넘어서」. 서울: 일천  
만 이산가족 재회 추진위원회, 1996.
- 전우택 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서울: 오름, 1996.
- 재무부 보고서. 「통일 2주년을 맞는 독일경제의 평가 및 시사점」. 서  
울: 재무부, 1993. 1. 28.
- 조창호. 「돌아온 사자(死者) 조창호의 북한생활 43년」. 서울: 지호, 1995.
- 통일부.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서울: 통일부, 1998.
- 통일원.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실무안내」. 서울: 통일원 인도지원  
국, 1997.
- 통일원.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7.
- 한국방송공사.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TV 특별생방송 138일의 기록」.  
서울: 한국방송공사, 1984.



## 2. 논문

- 김명기.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 -법적의무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13집. 서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연구소, 1993.
- 김명기 외. “남북이산가족 재회에 관한 연구.” 『인도법논총』4·5집. 서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연구소, 1983.
- 김선이. “분단국가의 인적교류정책과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법적문제의 소고.” 『성균관법학』제5호. 서울: 성균관대학교, 1994.
- 김정규.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이해.”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 연구 8호. 「남북한 갈등구조의 해소를 위한 방안」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제11회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논문집, 1995).
- 민성길 외.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사회로 가는 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기념 심포지움 논문집, 1995).
- 신영호.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제10회 통일문제 심포지움 논문집, 1994).
- 신영호. “대량 탈북사태와 사법적 대응.” 『법제연구』12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7. 6.
- 이용기. “이산가족 연구 어디까지 왔다.” 『역사비평』. 서울: 역사비평사, 1998. 가을.
- 이장희.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분단독일의 사례.” 『인도법논총』13집. 서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연구소, 1993.

- 이재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인적교류.”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제4권1호. 서울: 통일원, 1992. 봄.
- 임순희. “북한 새세대의 가치관.” 민족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 사회 문화」상권.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제1권2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 제성호.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법적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일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한 모색」. 서울: 통일원, 1992.
- 제성호. “남북이산가족의 법적성격과 해결방안.” 통일원. 「통일문제연구」제5권1호. 서울: 통일원, 1993. 봄.
- 지봉도.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의 실천적 방안.” 「인도법논총」14집. 서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연구소, 1994.
- 대한적십자사. “남북이산가족과 재결합.” 「인도법논총」13집. 서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연구소, 1993.

### 3. 월간 잡지.

- 명병훈. “이산가족, 상봉 그후 1년.” 「여성중앙」. 서울: 중앙일보사, 1984. 6.
- 송현순. “특집1 두만강야 말해다오.” 「한겨레 21」.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8. 4. 23.
- 오효진. “헤어져 30년, 만나 1년.” 「월간조선」. 서울: 조선일보사, 1984. 6.

우종창. “남북이산가족 상봉중개인 재미교포 「영 박」의 증언.” 「월간 조선」. 서울: 조선일보사, 1995. 1.

#### 4. 기 타

「연합통신」.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 最近 發刊資料 案內

####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계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한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응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육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 김성철 共著	6,500원
98-02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著	4,000원
<b>■ 북한인권백서</b>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의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의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b>■ 연례정세보고서</b>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전화: 901-2559, FAX: 901-2547)

## 회원가입신청서

<b>성명</b>			
<b>근무처</b>			
	<b>직위</b>		
<b>간행물 받을 주소</b>	(우편번호:            )		
<b>연락처</b>	<b>전화</b>		<b>FAX</b>
	<b>전자메일</b>		
<b>전공 및 관심분야</b>			
<b>회원구분</b>	<b>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b>		
<p><b>본인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b></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19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